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한다.

제1조증 "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(이하 "회계" 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자금의" 를 "그 자금의 조성과" 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 한다.

제5조를 제3조로 하고, 동조제3항증 "농촌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" 을 "농촌주택 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" 으로 하며, 제4항을 삭제 한다.

제6조를 제4조로 한다.

제7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증 "년리 8.0%" 를 "년리 6.5%" 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 한다.

제10조를 제6조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·세출에 이입 한다.

신.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<u>설치및운영조례</u>	제명 :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 <u>관리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주 택사업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 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 그 자금의 조성과 ----- ----- -----
제3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타회계 의 전입금, 보조금, 상환금,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	삭제
제4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보조금,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 에 대한 대여금(이하 "융자금"이라 한다)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	삭제
제5조(자금운영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"농촌주택개량사업"	제3조(자금운영) ① (현행 제5조 제1항과 같음) ② (현행 제5조제2항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"농촌주택개량"

현 행	개 정 안
<p>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"을 체결 하여 야 한다.</p> <p>④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정수관:건설도시국장, 분입정수관:주택과장, 수입금출납원:농촌주택계장</p>	<p>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"----- -----.</p> <p>삭제</p>
<p>제6조(자금의신청) (생략)</p>	<p>제4조(자금의신청) (현행 제6조와 같음)</p>
<p>제7조(융자 및 보조조건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</p> <p>1. 이 율 : 년리 8.0% 2. 상환방법 :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</p>	<p>제5조(융자 및 보조조건) ① (현행 제7조제1항과 같음) ② (현행 제7조제2항과 같음) ③ (현행 제7조제3항과 같음)</p> <p>1. 이 율 : 년리 6.5% 2. ----- -----</p>
<p>제8조(예비비)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 상할 수 있다.</p>	<p>삭제</p>
<p>제9조(준용)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 계의 예에 준한다.</p>	<p>삭제</p>
<p>제10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 6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p>